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8. 12 선고 2021가단1044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도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8.

판 결 선 고 2022. 8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 C[D생]과 피고 사이에 2021. 9. 1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소7047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. 9. 11. “C은 원고에게 26,581,030원 및 그 중 19,929,503원에 대한 2020. 3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20. 10. 6. 확정되었다(이하 위 판결을 ‘이 사건 확정판결’이라 한다).

나. C의 부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21. 7. 3. 사망하였고,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, 자녀인 C, F은 같은 날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으며, 피고는 2021. 9. 1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C은 2018. 10. 12. 이래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여 오고 있었고,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/7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지분을 처분하였는바,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2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구입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,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출받아 매수자금을 납부하고 대출금도 직접 납부하여 왔는바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이 있고,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므로,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

1)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

갑 제5호증, 을 제2, 5,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망인은 2015. 11. 5.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,7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. 11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는 2015. 11. 14.경 동생으로부터 3,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고,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기 및 그 매매대금, 피고가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동생으로부터 위 3,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,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없고, 망인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

2) 사해행위 여부

가) 관련 법리

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

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,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,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).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

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

나)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(1)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, 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망인과 피고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,700만 원 중 3,000만 원을 피고가 동생으로 빌려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,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과정에서의 대출금(2,000만 원)을 고려할 경우 매매대금을 사실상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부부가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어느 일방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 점, ③ 이 사건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피고가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인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고, 다른 상속인인 C, F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를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, 위 합의에 따라 정한 피고의 기여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.

(2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,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‘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),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고, C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었던 F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실상 상속 포기로 보이며, 이 사건 부동산의 2/7 지분을 가진 C의 채무 때문에 망인의 다른 자녀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(3)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그 처인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에 해당하고,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. 이와 같이 부부의

일방 당사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기존의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,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,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,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러한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근철

별지